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12.28.]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596-1번지 일원 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4. 신청자격」및「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3.12.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및 순위·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30호)과 국민임대주택(60호, 별도공급), 행복주택(40호, 별도공급)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모집공고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약자 기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니, 주거약자용 주택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강화신문 2단지(동일 단지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24B형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세대 내 중복신청, 공급대상자별(우선/일반) 중복신청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1개 입주자모집공고 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강화신문 2단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중 2개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개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퇴거)하여야 하며, 중복입주하는 경우 계약이 직권으로 해제 및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주택형	건설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가목)	(나목)	(다목)				
24A	30	24.83	13.7434	3.7571	-	42.3305	30	1	추후 결정	3	26	201동	철골구조 (모듈러)/ 개별난방	'25.07 (예정)

-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 및 세대 내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첨부된 팸플릿으로 반드시 형별 평면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신청이 불가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강화군 내 거주지관할 읍·면사무소)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나목(귀환국군포로)의 신청호수에 따라 일반공급호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24A형에는 벽결이형 에어컨이 기본설치 됩니다.
- **(24A형)세탁기는 주방 가스쿡탑 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설치장소가 협소하므로 반드시 실측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자에게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주택형	적용구분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4A	「가」군	2,544,000	127,200	2,416,800	50,670	(+) 3,000,000	5,544,000	33,170
						(-) 1,000,000	1,544,000	53,580
	「나」군	14,710,000	735,500	13,974,500	124,520	(+) 12,000,000	26,710,000	54,520
						(-) 10,000,000	4,710,000	153,680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각 주택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5.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및 「**6.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강화군 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2024.01.09.(화) ~01.11.(목) (10:00~17:00)	**강화군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 현장접수만 가능	**2024.05.22.(수)** 17:00 이후 *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024.06.11.(화) ~ 06.13.(목)** 10:00 ~ 15:00 *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4) ※ 현장계약만 가능

* 청약신청은 **강화군 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현장신청 (강화군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 **입주자격 조사, 부적격자 소명 및 대상자 선정** (강화군)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 → **계약체결** (LH)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d>무주택</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td></tr>
<tr><td>세대구성원</td><td>▪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tr><th>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th>비고</th></tr>
<tr><td>• 신청자</td><td></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td></tr>
</table>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대표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이 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퇴거완료)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입주 전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제1호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제2호 가목(국가유공자 등) -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347,719원 이하 (70% 적용 금액)	3,018,496원 이하 (90% 적용 금액)	4,024,661원 이하 (120% 적용 금액)
2인가구	3,003,226원 이하 (60% 적용 금액)	4,004,301원 이하 (80% 적용 금액)	5,505,914원 이하 (110% 적용 금액)
3인가구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3,811,028원 이하	5,335,439원 이하	7,622,056원 이하
5인가구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8,040,492원 이하
6인가구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8,701,639원 이하
7인가구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9,362,786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5,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귀환국군포로)의 경우 관련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 및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소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5.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배정호수

단지명	공급 형별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수급자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	
강화신문 2단지	24A	4	1	추후 결정	3	별도 배정호수 없음	

※ 귀환국군포로의 실제 신청인원에 따라 우선공급호수 합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대상자	대상자(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부의 선정기준에 따름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나목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은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 거주자로서 ②**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인 ③**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❶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❷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구분 및 배점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한부모가족 가장 어린자녀의 나이 (같은연령대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2세 이하	3세 또는 4세	5세 또는 6세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2인 모두 신청시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무효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됨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주택명 : 강화신문 2단지 영구임대주택, 주택관리번호 : 2023000718]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6.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대상자(입주자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 기준표 참조)	**강화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신청자 연령 높은 자	추첨

■ 배점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기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배점</th><th rowspan="2">배점기준(대상자)</th></tr>
<tr><th>100점</th></tr>
<tr><td rowspan="5">1. 강화군
거주기간
(30점)</td><td>1년 미만</td><td>22</td><td rowspan="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강화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강화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td></tr>
<tr><td>1년 이상~5년 미만</td><td>24</td></tr>
<tr><td>5년 이상~10년 미만</td><td>26</td></tr>
<tr><td>10년 이상~15년 미만</td><td>28</td></tr>
<tr><td>15년 이상</td><td>30</td></tr>
<tr><td rowspan="4">2. 신청자 연령
(25점)</td><td>만40세 미만</td><td>19</td><td rowspan="4">▶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td></tr>
<tr><td>만40세이상~만50세 미만</td><td>21</td></tr>
<tr><td>만50세이상~만60세 미만</td><td>23</td></tr>
<tr><td>만60세 이상</td><td>25</td></tr>
<tr><td rowspan="4">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포함)
(30점)</td><td>1~2인</td><td>24</td><td rowspan="4">▶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td></tr>
<tr><td>3인</td><td>26</td></tr>
<tr><td>4인</td><td>28</td></tr>
<tr><td>5인 이상</td><td>30</td></tr>
<tr><td colspan="2" rowspan="4">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td><td>15
(유형
3가지)</td><td rowspan="3">▶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신혼부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td></tr>
<tr><td>13
(유형
2가지)</td></tr>
<tr><td>11
(유형
1가지)</td></tr>
<tr><td>7</td><td>▶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신혼부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td></tr>
</table>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2.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구비서류		내 용	발급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별지1호 서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대상자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작성 및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3호 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4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추가서류) 확인서 내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①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②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③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별지5호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표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 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신청자 전원 제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행정복지 센터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 센터
	혼인관계서류	**< 일반공급-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출 >** • 신혼부부인 경우 :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6세이하 자녀가 있음을 증명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임신진단(확인)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별지 6-1·6-2호서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발급가능, 반드시 제출)	행정복지 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공사양식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신청자격 증명서」확인필수)**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국가보훈부/ 행정복지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별지 6-1·6-2호서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발급가능, 반드시 제출)	공사양식 / 행정복지센터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임신진단(확인)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배점관련 서류	대표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한국부동산원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입주대상자(당첨자)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4.05.22.(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하여 발표하며, 변경불가 합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의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대상(당첨)여부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당첨/낙찰자 명단 또는 당첨자 ARS(☏1661-7700)**]**
- 입주대상(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예비자)는 입주대상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또는 ARS(☎1661-7700)]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SMS와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며,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강화신문 2단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중 2개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개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 2024.06.11.(화) ~ 2024.06.13.(목) 10:00~16:00 *12~13시(점심시간)제외**
- **계약장소 :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4)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공통 준비서류	대리계약시 추가준비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새롭게 추가 제출해야 함**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단,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만 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분이어야 함(대리발급분 인정불가)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입주대상자로 선정 및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하오니 **계약금을 계약 전 미리 납부 하신 후 계약장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등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됨)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후 계약체결은 지정된 기간 내에 **현장계약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 이후 신청 당시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변경·통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 안내	•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입주 시기는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드립니다.
주택 소유 금지 및 중복 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함.**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3년의 경우 3,68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에 안내드립니다 • 입주예정일 이전에 계약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사전방문행사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운영하지 않으며, 팸플릿을 참고하여 청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신청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북측 및 남측에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에 조양방직(옛 조양방직 자리)카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에서 직선거리 500m 내로 강화도서관, 강화문화체육센터, 강화공설운동장, 신문리 다목적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에서 직선거리 1km 내로 강화초등학교, 합일초등학교, 강화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강화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위치하여 소음,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및 계약 전 주변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변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공동구환기구, 쓰레기투입구,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변도로 등 외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4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모듈러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여 임대합니다. • 201동 1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실, 방재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등)이 시공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세대 발코니 및 46A형 침실2 창호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하며 3 개동을 통합 관리합니다. • 201동 옥상에 지상파수신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층고는 2.8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확장28대(전기차용4대 포함), 장애인3대, 일반형 60대 총 91대입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단지 동출입구에는 자동문과 로비폰, CCTV가 설치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배치 및 호별 위치 상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있으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동력,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설치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보안등 점등에 따라 수면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가압급수펌프, 급배기팬(펌프실) 및 아파트 PIT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저층(4층)으로 구성된 단지로서 수목 식재 등에 따른 부분적인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보도와 인접한 경우 사생활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키를 부착하며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1개소)에 마련되어 있고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무인택배함은 201동은 1층 관리사무소입구에 202동, 203동은 1층 주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사 시 형별, 동별, 라인별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설치됩니다. • 단지 내 CCTV는 36대 설치예정이며,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시설에 관하여 인천도시가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임대주택 단지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복합커뮤니티센터, 지하층 층고, 일부 지상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목재 및 금속 담장, 생울타리 등이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등은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 및 단지 외부 연결 보행통로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 및 단지레벨, 시설물, 보행통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경사지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 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색채디자인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체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외관디자인(색체, 패턴 등)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위치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치변경 요청이 불가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호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행복지원센터(구 관리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쉼터,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는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응 등 환기성능 향상을 위한 전열교환기가 발코니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세대통합단자함은 세대 현관에 미러형으로 설치합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모듈러 공법 특성 상 세대 벽체는 경량벽체 등으로 구성되어 입주 후 중량물(벽걸이TV 등)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 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색상, 재질,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구분	유의사항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콘센트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 합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서 경량벽체로 시공하므로 중량물 설치 시 탈락, 누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정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욕실 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됩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 발코니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4A형의 경우 세탁기는 주방 가스쿡탑 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설치장소가 협소하므로 반드시 실측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내부시설(장비,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발코니 태양광 모듈 전지판 설치 등은 낙하위험성 등으로 원칙적으로 설치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약 설치시 시설물관리주체인 관리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I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31-82-13727), 경기북부지역본부 (420-82-00573)	지에스건설㈜ (104-81-18121) 외 2개사	-	㈜에이프러스씨엠 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토지,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 지방세정 자료

	자산	건축물 및 주택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4. 문의처

문의처	. 강화군청 및 강화군 관내 읍·면사무소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8.

강화군

LH 인천지역본부

[별지 1호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_우선/일반공급 (앞면, 신청자작성)

영구임대주택[우선/일반공급]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 24A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 화() -		강화군 전입일	년 월 일	

우선공급

□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무주택자로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5호에 따른 등록포로인 사람

□ (시행규칙 별표3 2호 다목) 수급자 중,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사람**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미성년(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강화군) 거주여부 (), 강화군 최종전입일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회
④ 혼인신고일 (. .)
⑤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자녀의 나이 ()세

□ (시행규칙 별표3 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일반공급 신청순위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만65세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수가 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3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1호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뒷면, 지자체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구분		배점 100점	득점	배점기준(대상자)
1.**강화군**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신청자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강화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강화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24**		
	5년 이상~10년 미만	**26**		
	10년 이상~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미만	**19**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21**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23**		
	만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포함)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 중인 사람(신혼부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8: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 중인 사람(신혼부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8: 귀환국군포로
총점		**점**		읍 · 면사무소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사항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증빙서류			

[별지 2호서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은 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주택유형**(영구임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_____년 _____월 _____일

확 인 자
(임 차 인) _____(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 . . .

강화군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4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앞면)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7.>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본 인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뒷면)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호서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세입자작성)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LH계약 □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건물주작성)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 기타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 아니오□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강화군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 6-1호서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예비신혼부부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개인정보·금융정보	☐	상기 (1), (2)는 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	상기 (1), (2)는 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강화군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6-2호서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예비신혼부부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강화군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7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임 내역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강화신문 2단지(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신청 /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신청, 계약 중 해당란에 ○표			

20 년 월 일

위 임 인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붙 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사본